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무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변경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제조 연월 표시 등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개선(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
-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였으나, 변경절차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

나. 제조시기 표시방식 개선(별표 5 2호나목)

- 적합성평가 제조시기 표시방식에 대해 제조 연월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파법 제58조의2, 제58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경우(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.)”를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별표 5 제2호나목 중 “제조시기(제조연월로 표기)”를 “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(예 : 제조 연월,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,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)”로 하고, 같은 목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, 포장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.

부칙 <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-00호, 2023. 00. 0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 기기는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.)

3. (생략)

②~③ (생략)

[별표 5]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(제23조 관련)

1. (생략)

2. 표시방법

가. (생략)

나.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(또는 상호명), 기자재 명칭(또는 제품명칭), 모델명, 제조시기 (제조연월로 표기),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. <단서 신설>

3. (현행과 같음)

②~③ (현행과 같음)

[별표 5]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(제23조 관련)

1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----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(예 : 제조 연월,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,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)---. 다만,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

다.~차. (생 략)
3. (생 략)

설명서, 포장, 인터넷 홈페이지
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.

다.~차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